

—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7월 9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7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7월 15일

제9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선산보건진료소 인력보강을 위하여 승인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을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로 지정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지정내용 : 보건진료원

라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
- 경북도 자치행정과-5357('04. 7. 2)호의 구미시 보건진료원 정원 승인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경상북도의 구미시 보건진료원 정원 승인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현행에서 보건진료원을 추가 지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